

라. 건축물관리점검결과의 이행(제16조)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주요구조부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되는 등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하도록 함.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제32조, 제33조 및 제3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건축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 원인의 분석 및 사후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 김현미

●대통령령 제306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17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9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적용 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